

1. 조세관리

- 2022년 상반기 세금 징수현황 및 주목할 만한 사항

2. 법인소득세

- 정기적으로 여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CIT 감면 정책
- 자본 출자자산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 세금부과
- 매출 장출 첫 연도 결정시점

3. 간접세

- “기초 화학 물질” 이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VAT”) 2% 감면 적용됨
- 확장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4. 개인소득세 (“PIT”)

- 개인소득세 (“PIT”) 원천징수 전자증명서 사용 지침
- 비거주자에 대한 PIT 정책
- 조세조약에 따른 PIT 면제 및 감면

5. 외국계약자세

-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부과되는 외국계약자세
- 보세창고 임대소득에 대한 FCWT

7. 법류

- 베트남 산업단지 및 경제구 관리에 관한 제35/2022/ND-CP호 시행령

6. 무역 및 관세

- 제38/2018/TT-BTC호 시행 규칙 부록 II에 명시된 물품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 제출 대상 수입물품 목록)
- 수입된 운영 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배분
- 세금환급/ 미징수 결정에 대한 관세관리코드 발급 안내
- (“RCEP Agreement”)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따라 우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 공지

조세관리



종합 정보

2022년 상반기 세금 징수현황 및 주목할 만한 사항

1. 상반기 수행 결과

2022년 첫 6개월에 총 국고예산의 징수액은 VND 775,262 bil 을 달성했으며 2022년 계획대비 66% 및 2021년 동기대비 117.6%에 해당한다.

2. 세무 감사/ 조사

2022년 첫 6개월 동안 모든급의 조세당국은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20,720 케이스 조사/ 감사를 실시해왔으며 조세당국의 오피스에서 276,726부의 세금 신고서류를 검토해왔다. 세무 감사/ 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VND 13,937bil을 달성했다. 그 중에서:

- 세금 징수액 증가: VND 3,855 bil;
- 공제액 감소: VND 639 bil;
- 손실 감소: VND 9,443 bil;
- 이전가격 감사: 74기업의 감사를 통해 VND 288 bil 세금 징수액 증가, VND 488 bil의 손실 감소 및 VND 0,87 bil의 공제액 감소를 달성함.

3. 2022년도의 하반기에 조사/감사 계획 시행을 위한 지침:

- 조세채무 관리 강화, 집행을 강화 및 세금 손실 줄임;
- 징수계획 달성을 위해 세무 조사/감사 강화;
-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및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 문서

정기적으로 여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CIT 감면 정책

기업이 100명 이상의 여직원을 채용하며, 전체 정규직 인원의 30%를 차지하는 경우 기업이 여성 직원에 대해 지출되는 실제 추가 금액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면 해당금액만큼 CIT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정규직 여직원수에 대한 증명서류를 충분히 보유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관할 노동당국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된다.

(Hai Phong 세무국의 2022년 7월 7일 제1847/CTHPH-TTHT 호 OL)

자본 출자자산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 세금부과

회사가 개인으로 부터 상표의 소유권으로 자본 출자를 받은 경우 회사가 지적재산법에 따라 개인으로 부터 이전 받음을 완료한 후 상표의 소유권이 회사의 자산으로 확정되며 회사의 영업자본으로 기록되면 해당 상표 가치가 CIT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 출자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조세관리법 제50조에 따른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7월 11일 제32670/CTHN-TTHT 호 OL)

매출 장출 첫 연도 결정시점

기업이 시운전 단계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베트남 회계기준 제14호 매출 및 기타 소득에 대한 5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판매소득으로 인식되며 해당연도가 매출 장출 첫연도로 간주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5월 31일 제9482/CTBDU-TTHT 호 OL)

법인세 ("CIT")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및 외국계약자세



지침 문서

"기초 화학물질" 이 제 15/2022/ND-CP 호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VAT") 2% 감면 적용됨

"기초 화학물질"은 제 15/2022/ND-CP 호 시행령, 제 1.1 조에 의한 VAT 감면대상 제외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 15/2022/ND-CP 호 시행령의 부록에도 명시되지 않는다.

"기초 화학물질"을 제조 영업하며 VAT 10%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제 15/2022/ND-CP 호 시행령에 따라 VAT 2%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2년 6월 27일 제2252/TCT-CS 호 OL)

확장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현행 VAT 법정책상 확장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규정이 없다. "확장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VAT 환급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재무부는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관할급에 보고하고 있다.

일단 확장 투자프로젝트의 매입 VAT가 확장 투자프로젝트의 조건으로 환급될 수 없다. 회사가 당기의 매입 VAT 과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VAT를 Form 01/GTGT으로 신고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7월 7일 제11749/CTBDU-TTHT 호 OL)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부과되는 외국계약자세

회사가 외국인 계약자로 부터 교육서비스가 동반된 로봇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교육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해 받은 소득은 외국인 계약자세 ("FCWT") (VAT 및 CIT 포함)가 부과된다.

- 로봇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공의 경우: CIT 납부액은 과세소득에 10% CIT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 교육 서비스 제공의 경우:
 - ✓ VAT는 과세소득에 5% VAT율을 적용한다;
 - ✓ CIT는 과세소득에 5% CIT율을 적용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6월 29일 제2007/CTBNI-TTHT 호 OL)

보세창고 임대소득에 대한 FCWT

외국기업은 ("외국계약자") (해외에 제3자에게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 회사의 보세창고를 임대하여 물품을 수송하는 경우 재무부의 제 103/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외국기업이 베트남 회사의 보세창고를 임대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물품을 유통하거나 베트남 무역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FCWT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6월 23일 제1927/CTBNI-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개인소득세 ("PIT") 원천징수 전자증명서 사용 지침

회사는 PIT 원천징수 증명서 사용한 시 세 무 당 국 에 등록, 발급 통지, 전자데이터를 발송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세무총국이 안내한다. PIT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제123/2020/ND-CP호 시행령 제32.1조의 의무적인 사항으로 전자 증명서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한다.

PIT 원천징수 전자증명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동안 회사가 자체 발급한 PIT 원천징수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세무당국은 PIT 원천징수 인쇄 증명서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세무당국으로 부터 구매한 잔여 증명서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사용한다.

(세무총국의 2022년 7월 12일 제2455/TCT-DNNCN 호 OL)

비거주자에 대한 PIT 정책

베트남시장을 연구 조사하기 위해 해외기업에 의해 베트남으로 파견된 외국인 직원이 베트남 비거주자 조건을 충족하면:

- 베트남 회사에 의해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된 소득이 베트남 원천 소득으로 간주된다. 베트남 회사가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하기 전에 20% PIT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
- 베트남 회사가 해외기업과의 대신 지급 합의서에 따라 해외기업을 대신하여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한 소득은 PIT과세대상이 아니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7월 8일 제32313/CTHN-TTHT 호 OL)

조세조약에 따른 PIT 면제 및 감면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에 따른 PIT 면제 및 감면 절차는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 제 80/2021호 /TT-BTC 호 시행규칙 제62조 2항에 따라 수행한다.

외국인 당사자가 베트남 단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전 15일 이내에 계약을 서명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베트남 당사자에게 DTA에 따라 세금 면제감면 신청서류를 전달한다. 이런 서류는 첫 번째 세금 신고서류와 같이 베트남 당사자의 직접 관리 세무국에 제출된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7월 1일 제31196/CTH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제 38/2018/TT-BTC호 시행 규칙 부록 II에 명시된 물품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 제출 대상 수입물품 목록)

ATIGA, CPTPP, EVFTA, UKVFTA, RCEP와 같은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이 제 38/2018/TT-BTC호 시행 규칙 부록 II에 명시된 물품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을 충족해야 수출업자가 자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관세당국에 의해 수락된다.

(관세총국의 2022년 6월 14일 제2307/TCHQ-GSQL호 OL)

수입된 운영.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배분

제 39/2015/TT-BTC호 시행규칙 제 6조 4항을 수정.보완하는 제 60/2019/TT-BTC호 시행규칙 제 1조 5항에 따르면 기업이 (CD에 기록 및 저장된) 운영통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여러 엔진,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로열티가 포함되면:

- 수입 서류를 기반으로 관세 신고자는 수입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신고하기 위해 제 39/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 16조 2항에 명시된 가치 배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및
- 소프트웨어 가치는 운영통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수입 엔진, 기계 및 장비에 완전히 배분되어야 한다.

제 39/2015/TT-BTC 호 제 16조 2항에 따라 4가지의 관세 가치 배분 방법이 있다: (i) 수량에 따른 배분; (ii) 중량에 따른 배분; (iii) 체적에 따른 배분; (iv) 영수증 가치에 따른 할당.

(관세총국의 2022년 6월 15일 제 2333 TCHQ/TXNK호 OL)

지침 문서

세금환급/ 미징수 결정에 대한 관세관리코드 발급 안내

제 06/2021/TT-BTC 호 시행 규칙에 첨부된 부록 I의 Form 13/TXNK (세금 환급/ 미징수 결정)에 따르면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관세 담당자가 다음 구조로 관세 관리 코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관세지국의 코드/ 순서 번호/ 연도/ 세금 환급 코드/ 신고유형 코드.** 구체적으로:

- 종이 신청서류의 경우: 세관당국의 지도자가 환급/ 미징수 결정서를 서명한 후 신청서를 처리하는 세관 담당자는 제 06/2021/TT-BTC 호 시행 규칙에 첨부된 부록 I의 Form. 13/TXNK (세금 환급/ 미징수 결정서 양식)의 지침에 따라 관세관리코드를 발급 진행한다.
- 전자 신청서류의 경우: 세관당국의 지도자가 환급/ 미징수 결정을 승인한 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관세 관리 코드를 발급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7월 5일 제2697/TCHQ-TXNK호 OL)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따라 우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 공지

산업통상부의 RCEP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2022년 2월 18일 제05/2022/TT-BCT호 시행규칙에 따라 ASEAN 사무국의 발표를 기반으로 관세총국은 웹사이트 <https://rcept.sharepoint.com> 에서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 원산지 증명서를 서명할 유관기관의 서명날인 견본
-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수출업자 리스트

(관세총국의 2022년 7월 12일 제2844/TCHQ-GSQL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류

신규 규정

베트남 산업단지 및 경제구 관리에 관한 제35/2022/ND-CP호 시행령

정부는 2022년 5월 28일에 베트남의 산업단지("IP") 및 경제구("EZ") 관리에 관한 제35/2022/ND-CP호 시행령("제35호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제35호 시행령은 전문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인 02개의 산업단지(정부의 일반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가능함)를 추가한다. 제35호 시행령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유효되며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제82/2018/ND-CP호 시행령을 대체한다:

1. 영향을 받는 대상: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회사 및 관련 국가 관리 기관

1. 산업단지 설립 결정서 발급 절차 폐지

산업단지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 유관기관이 공공투자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자금을 사용하는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발행한다.
- 유관기관이 투자주장 승인하고 동시에 투자자를 승인하거나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건설 및 사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투자허가서를 부여한다.

2. 산업단지 관리 과정에서 지방 당국에 더 많은 권한 부여

산업단지의 위치, 규모 및 계획 영역에 대한 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성 인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 중앙정부 직할시 또는 성의 산업단지 목록에서 결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규모에 비해 2% 미만 및 6ha 미만으로 조정한다.
- 건설부, 천연자원환경부, 기획투자부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중앙정부 직할시 또는 성의 산업단지 목록에서 결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규모에 비해 10% 미만 및 30ha 미만으로 조정한다.

3. 도시 시내에서 신규 산업단지 개발 제한

특급 도시, 중앙정부 직할시 1급 도시, 성급 1급 도시에 신규 산업단지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첨단 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의 형태로 투자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4. 산업단지를 도시 - 서비스 구역 개발로 전환

산업단지를 도시-서비스 구역 개발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 따라서 전환 시 아래와 같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중앙정부 직할시 또는 성 또는 도시의 개발 계획에 맞춰야 한다.
- 특급 도시, 중앙정부 직할시 1급 도시, 성급 1급 도시 내에 위치한다.
- 산업단지의 설립일로 부터 전환예정일까지의 운영기간은 최소 15년 또는 산업단지의 운영기간의 반 이상 되어야 한다.
- 전환된 지역에 투자자와 기업에 의해 동의되어야 한다.
-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류

신규 규정

베트남 산업단지 및 경제구 관리에 관한 제35/2022/ND-CP호 시행령 (Cont'd)

II. 영향을 받는 대상: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회사 및 산업단지, 경제구내에서 활동하는 회사

산업 단지에 대한 정의에 전문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를 추가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법규정에 의한 세금 인센티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인적 자원 개발, 창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된 기타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III. 영향을 받는 대상: 산업단지 및 경제구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

1. 전문가 및 근로자는 산업단지 내 숙박시설에 임시 거주 및 체류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근로자는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숙박 시설에 임시 거주 및 체류 가능하다. (베트남 사람의 거주에 관한 법규정 및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법규정 근거)

- 베트남 전문가 및 근로자의 경우 거주 및 임시 거주 등록절차가 거주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외국인 전문가 및 근로자의 경우 거주 및 임시 거주 등록절차가 베트남에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및 체류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수출가공기업 ("EPE")에 대한 주목할 만한 규정:

- EPE와 베트남 영토내에 비관세 구역이 아닌 구역과 간의 물품 교환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EPE가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법, 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6월 세무관세뉴스를 참조하십시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